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 관리 본 부 환 경 정 책 과		시정		

【제 목】 공문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현 황】

생산등록번호	공문서 제목	생산부서가 명시한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 유	비 고
환경정책과- 35356 (2017.12.29.)	2017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잔액 반납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5호	지출검토	
환경정책과- 35194 (2017.12.28.)	유관기관 관계자 만찬 간담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5호	내부결재	
환경정책과- 34945 (2017.12.26.)	2018년 1월 미세먼지 상황실 근무자 명단 작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6호	내부결재	

【지적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도 정보공개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2017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잔액 반납 안내 공문등 3건의 생산문서 대하여 공개대상 문서임에도 비공개 문서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환경정책과장은 공개대상 문서임에도 비공개 문서로 관리해 오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문서로 전환조치 하기 바라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환경 정책 과		시정		

【제 목】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소홀

【관련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현 황】

- 청주시 공중화장실 현황

계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	휴게소	철도역	체육시설	가로변	기타
497	63	28	4	3	8	3	4	2	382

※ 기타 : 관공서 59, 주유소 247, 열린화장실 51, 업무시설 25

【지적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및 제7조(관리자 교육)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놓고 가장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에서는 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교육 실시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환경 정책 과		시정	부과 10,550,000원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94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현 황】

※별첨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누락 현황

【지적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2항 및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의 20을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정책과에서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기검사 지연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을 부과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을 부과하여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감사당일까지 정기검사를 지연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112건/10,5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정책과장은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 이륜차 112대에 대하여 10,55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고,
-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4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환경 정책 과		주의		

【제 목】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확인 소홀

【관련규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호
-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2호

【현 황】

- 변경신고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미검토 사업장

연번	업소명	소재지	변경일	대기		폐수		비고
				종	가입 여부	종	가입 여부	
1	(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길 ****	2017.8.9	1종	○	5종	×	새 로 운 오염물질 발 생
2	***** (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길 ****	2018.5.30	1종	○	1종	○	
3	***** (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	2018.4.25	1종	○	1종	○	
4	***** (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	2017.6.5	1종	○	1종	○	
5	***** (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부로 *****	2018.3.21	2종	○	5종	○	
6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번길 ***	2018.3.22	1종	○	4종	○	

○ 책임보험 일부 미가입 사업장

연번	업소명	소재지	신고인	대기		폐수		비고
				종	가입 여부	종	가입 여부	
1	(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길 ***	대표 이사	1종	○	5종	×	
2	(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길 **	대표 이사	4종	×	1종	○	

【지적내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1종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따라서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인·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환경정책과에서는 위의 현황에서와 같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환경책임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책임보험의무 가입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 가입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보험 가입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5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시정		

【제 목】 환경공무직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인사담당관-9545호 (2018. 6. 8.)

【환경공무직 현황】

<단위:명>

부 서 별	정 원	현 원	비 고
합 계	264	264	
자원관리과	7	7	
상당)환경위생과	62	62	
서원)환경위생과	57	57	
흥덕)환경위생과	73	73	
청원)환경위생과	65	65	

【지적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에 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

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은 시 산하기관 공무원 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가 비전자적(수기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여 인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근무상황 관리를 전자적 형태로 개선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인사담당관은 2018. 6. 8.(인사담당관-9545호)자 공문에 의거 공무원근로자(일반공무원, 수도검침직)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장기재직휴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환경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에서 별도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시달하였다.

그런데 자원정책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환경공무원 264명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휴가(장기재직휴가 등)운영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원정책과장은 환경공무원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휴가 운영기준 (장기재직휴가 등)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시달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6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정 책 과		시정	추징 411,642,000원	

【제 목】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세입 등 조치 소홀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20조, 25조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내지 제39조
-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보관(2018. 6. 22.현재)
 - 보증금 납부금액 : 금411,642,000원(금사억일천일백육십사만이천원)
 - 보증금 납부일자 : 2018. 3. 9.
 - 납부자(보증보험사) : ***** (주)
 - 보증내용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주)) 조업 정지로 사업장내 폐기물 방치, 처리 명령 불이행에 따라 보험사에 이행보증금 납부 요구 및 수령

【지적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 또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발생 당시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따라서 수입대체경비로 집행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을 수납 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했다.

○ 하지만, 자원정책과에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 (주)에서 조업 정지로 인한 사업장내 폐기물 방치와 관련하여 처리 이행보증금 411,642,000원을 2018. 3. 9. ***** (주)으로부터 환경정책과 세입 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수납받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2018. 6. 22. 감사일 현재까지 시에 세입 등 조치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자원정책과장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수납받은 이행보증금 411,642,000원을 세입조치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7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정 책 과	-	주의	-	

【제 목】 물품 통합발주 노력 미흡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등

【현 황】

- 생활쓰레기 처리용 마대 구매 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적요	발의 일자	계약 방법	거래처명	지급액	비고
계	13건				234,529,000	
재료비	생활쓰레기(타는) 처리용 종량제 100리터 공공용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1-02	1인수의 계약	*****	18,4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타는) 처리용 종량제 100리터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5-01	“	*****	18,4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 처리용 종량제 100리터 가연성 마대, 20리터 불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1-02	“	*****	17,310,000	
재료비	생활쓰레기 처리용 20리터 불연성, 100리터 가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7-03	“	*****	18,660,000	
재료비	생활쓰레기 처리용 50리터 불연성, 100리터 가연성 공공용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7-25	“	*****	18,254,000	
재료비	생활쓰레기(안타는)처리용 종량제 50리터 불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2-06	“	*****	17,9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안타는)처리용 종량제 50리터 불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3-03	“	*****	17,945,000	

통계목	적요	발의 일자	계약 방법	거래처명	지급액	비고
재료비	생활쓰레기(불연성)처리용 종량제 50리터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3-28	“	*****	17,9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안타는)처리용 종량제 50리터 불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5-01	“	*****	17,9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안타는)처리용 종량제 50리터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6-08	“	*****	17,9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안타는)처리용 종량제 50리터 불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7-03	“	*****	17,9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안타는)처리용 종량제 50리터 불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09-21	“	*****	17,945,000	
재료비	생활쓰레기(안타는)처리용 종량제 20리터 불연성, 50리터 불연성 마대 제작 및 납품	2017- 10-30	“	*****	17,800,000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Ⅲ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통합 발주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 1 월부터 10월까지 13건 234,529,000원의 생활쓰레기 처리용 종량제 공공용 마대를 구매하면서 통합 발주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한데도

업체가 관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각각 따로 나누어 발주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은 생활쓰레기 처리용 마대 구매시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쓰레기 처리용 마대 구매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8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정 책 과		주의		

【제 목】 세출예산 예산과목 성질별 집행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 세출예산 예산과목 성질별 집행 소홀 내역

(단위:원)

과 목	적 요	지출일	집행액	거래처	적합 예산과목
계			7,478,790		
공공운영비	복사기 토너 구입	2016.08.31.	520,000	*****	사무관리비
〃	토너구입	2016.11.29.	875,600	*****	〃
〃	복사기 토너 구입	2016.12.14.	2,975,390	*****	〃
〃	프린터 토너 구입	2016.12.28.	1,997,800	*****	〃
〃	복사기 토너 등 구입	2017.12.26.	1,110,000	*****	〃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집행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원정책과에서는 토너가 사무 운영 소모성물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토너 구입비를 집행하여야 했다.

○ 그러나, 자원정책과에서는 토너를 구입(5회, 7,478,790원)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예산과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사무 운영 소모성물품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 과목별 구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9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정 책 과		주의		

【제 목】 현금영수증 사용대장 작성·비치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미 작성·비치 : 2015. 10월 ~ 2018. 4월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자원정책과에서는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하고도 현금영수증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2015. 10월부터 2018. 4월까지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 후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여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0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정 책 과		개선		

【제 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확인 미흡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5항 및 8항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현 황】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구 분	내 용	비 고
수 거 일	• 단독주택, 음식점 및 상가 등 : 격일수거(거주지 또는 사업장 앞) • 공동주택 : 매일(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수거장치 설치 장소)	격일수거요일 : -월수금 또는 화목토
배출용기	• 단독주택, 음식점 및 상가 등 : 납부필증 규격에 해당하는 용기 (배출용기 - 3리터,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 • 공동주택 : 납부필증 또는 전용수거장치 규격에 해당하는 용기	배 출 용 기 는 그 릋 점 에 서 규격별로 판매
수 수 료	• 단독주택, 음식점 및 상가 등 : 리터(ℓ)당 60원(납부필증 구매) • 공동주택 : 전용수거장치(RFID 수거장치)일 경우 : KG당 70원	RFID 수거장치는 정보처리비용 추가발생
수거업체	• 총 8개 업체가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수거·운반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흥덕구 신대동 일원)로 수송	조례 14조에 의거 인구 10만명당 1개 업체 제한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년 별	합 계		상가, 단독주택 등 (납부필증 부착)			공동주택 (RFID 수거장치)		
	수거량	수수료	수거량	수수료	정산단가	수거량	수수료	정산단가
2015년	71,064	4,672	61,625	4,018	65.2원/kg	9,439	654	69.3원/kg
2016년	68,976	4,482	56,993	3,654	64.1원/kg	11,983	828	69.1원/kg
2017년	66,326	4,354	52,135	3,373	64.7원/kg	14,191	981	69.1원/kg

- ▶ 납부필증의 기준가격은 L당 60원, RFID 수거장치 수수료는 Kg 당 70원
- ▶ 납부필증 정산단가의 경우, 3년평균 64.6원/kg에서 약 $\pm 0.9\%$ (± 0.6 원)의 편차가 발생했고, 이를 3년 평균 수거량 68,789,000kg에 적용하면 $\pm 619,101$ kg의 수거량 편차발생

【지적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5항에 따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고,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항 및 3항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2항 및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2항에 따르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필증을 매분기별로 제작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판매를 대행 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배출용량에 맞게 납부필증을 판매소(마트, 슈퍼 등)에 구매하여 전용 배출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때 용기표면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이렇게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납부필증의 부착여부와 전용용기의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의 부착여부 등을 자원정책과와 폐기물처리사업자가 병행 확인하는 것이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시 전용용기에서 떼어낸 후 별도보관하고 있던 납부필증(2017년 304만장)을 자원정책과에서 단순 확인하고 소각처리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자에게 처리수수료 납부확인을 전담하게 하고 자원정책과가 별도로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확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적법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자 또는 수거 인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납부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치 않고 수거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은 수거 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시, 납부필증의 부착내역을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과 납부필증(수수료) 기록내역을 정기적으로 비교확인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정 책 과		주의		

【제 목】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제25조제3항, 제29조, 제46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2조제3항

【현 황】

- 행정처분에 따른 부적정 사후관리 현황

행정처분 총 계	부적정 사후관리 (현지확인 소홀)			비 고
	계	3회 이상 미확인	미확인	
154건	9	8	1	

- 사후관리 소홀 사업장 현황 : 붙임

【지적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에 따라 지도·점검 받아야 하며,

- 같은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영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자원정책과에서는 위의 현황에서와 같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지 확인하여야 하나 일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횟수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은 관련 법령 및 훈령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사업장 행정처분 후 사업장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현장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2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주의 3	시정		

【제 목】 공무원 근무상황부 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6조
- 「청주시 환경관리원 채용 및 복무규정」 제14조

【현 황】

소 속	직	성 명	종 별	기 간	비 고
자 원 관리과	환 경 관리원	***	특별휴가	2017.11.30.~ 2017.12. 6	부서장 결재누락
		***	장기재직휴가	2017.9.11.~ 2017.9.15	결재절차 부적정
		***	연가	2017.7.19.	결재절차 부적정
		***	공가	2017.11.29.	결재절차 부적정
		***	연가	2017.7.31.	결재절차 부적정
		***	공가	2017.3.29.	결재절차 부적정
		***	공가	2017.11.21.	결재절차 부적정
	공무직	***	연가	2018.3.21	결재절차 부적정
		***	공가	2018.4.4.	결재절차 부적정
		***	공가	2018.3.28.	결재절차 부적정

- ▶ 공통지적사항 : 부서장 결재가 아닌 담당(팀장)이 결재, 근무상황부 종별란 기재사항 오기, 문서등록번호 미부여 및 문서보존기간 미표시 등

【지적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에 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편철 및 관리)에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6조(보존기간)에서는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주시 환경관리원 채용 및 복무규정」 제14조(복무관리) 2항에 보면, 관리책임자는 관리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2호 서식의 관리원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3항에는 관리원의 근무상황 관련 결재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원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부서장 결재가 아닌 담당(팀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근무상황부 종별란 기재사항 오기, 결재권자 승인없이 휴가 실시, 문서등록번호 미부여 및 문서보존기간 미표시 등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자원관리과장은 비전자적 형태로 관리해 오고 있는 근무상황부에 대해서는 전자적 형태로의 전환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근무상황부 종별란의 오기사항 등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또, 생산년도가 경과한 근무상황부는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보존용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 부서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결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전결규정을 위반한 팀장들에게 한하여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공무원】

- | | |
|---------------------------|-------------|
|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공업*급 ***** | 【주의】 |
|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공업*급 ***** | 【주의】 |
|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공업*급 ***** |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	주의	추징/3,223,510원	

【제 목】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소득세 미징수

【관련규정】

- 소득세법 등

【현 황】

- 2018년 주민감시요원 수당 소득(지방소득)세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요 목	감시 요원	지급일	지급액	정당 징수내역			징수액	차 액	비고
				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총계(29건)	39명		97,682,430	3,223,510	2,930,460	293,050	-	3,223,510	
소계(5건)	29명		64,716,100	2,135,620	1,941,470	194,150	-	2,135,620	
2018년 1월분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 외 4	2018-02-02	8,633,800	284,910	259,010	25,900	-	284,910	
2월분	*** 외 7	2018-03-02	15,266,740	503,800	458,000	45,800	-	503,800	
3월분	*** 외 7	2018-04-03	14,353,500	473,660	430,600	43,060	-	473,660	
4월분	*** 외 7	2018-05-04	13,058,720	430,940	391,760	39,180	-	430,940	
5월분	*** 외 7	2018-06-01	13,403,340	442,310	402,100	40,210	-	442,310	
계(5건)	10명		32,966,330	1,087,890	988,990	98,900	-	1,087,890	
2018년 1월분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 외 1	2018-02-02	7,095,140	234,140	212,850	21,290	-	234,140	
2월분	*** 외 7	2018-03-02	5,918,000	195,290	177,540	17,750	-	195,290	
3월분	*** 외 7	2018-04-03	7,049,010	232,620	211,470	21,150	-	232,620	
4월분	*** 외 7	2018-05-04	6,458,960	213,150	193,770	19,380	-	213,150	
5월분	*** 외 7	2018-06-01	6,445,220	212,690	193,360	19,330	-	212,690	

【지적내용】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 의무) 및 같은 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더불어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총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청주권광역매립장 및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하지만, 201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청주권광역매립장 및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위 현황 같이 자원관리과 기타보상금에서 *** 등 39명에게 총 97,682,43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

○ 청주권광역매립장 경우 29명의 주민감시요원에게 64,716,100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2,135,620원 (소득세 1,941,470원 지방소득세 194,150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 또한 소각장은 주민감시요원 10명에게 32,966,330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1,087,890원(소득세 988,990원 지방소득세 98,900원) 등 총 사업소득세 3,223,510원(소득세 3,223,510원 지방소득세 293,05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은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및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시 소득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18. 1.부터 2018. 5. 까지 청주권광역매립장 29명의 주민감시요원 사업소득세 2,135,620원 (소득세 1,941,470원 지방소득세 194,150원) 및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10명의 사업소득세 1,087,890원 (소득세 988,990원 지방소득세 98,900원) 등 총 사업소득세 3,223,510원 (소득세 3,223,510원 지방소득세 293,050원) 을 빠른시일내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4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관 리 과		시정		

【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관련규정】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현 황】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 2017.02.24. 제603호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 부(2018. 1월~4월)/ 5건 869,000원

지출과목	적 요	집행일자	사용금액	채 주
	계(5건)		869,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석식 제공	20180202	178,000	***
"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간담회 오찬 제공	20180227	203,000	***
"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회의에 따른 석식 제공	20180306	110,000	***
"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간담회 오찬 제공	20180312	196,000	***
"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오찬 제공	20180417	182,000	***

【지적내용】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사 수, 집행유형, 금액금액으로 한다.

○ 따라서, 자원관리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했다.

○ 그러나, 자원관리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건 869,000원에 대해 감사일(2018. 6. 18.) 현재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자원관리과장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건 869,000원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후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5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자 원 관 리 과		권고		

【제 목】 사후관리 매립장의 방역약품 공급 사항 부적정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현 황】

- 가정용 방역약품 공급내역

연번	매립장명	공급처	지급시기	개수	금액(원)	비고
2016	문암매립장	강서2동 마을주민	2016.5	2,970	7,187,400	
2017	문암매립장	강서2동 마을주민	2017.6	3,150	7,623,000	

【지적내용】

- 생활폐기물 매립이 종료된 관리형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자원관리과에서는 관리형매립시설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100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고 사용종료로부터 30년 이내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9] 3. 자. 에 따라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6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방역 외에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문암매립장 주변마을에 가정용 방역약품인 살충제를 공급하여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문암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고 최종 복토와 빗물배제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부지 안정화 및 환경정화 기간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으로 유지되고 있어 사후관리의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방역약품은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암매립장 주변마을에 공급하고 있다지만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매립장의 사용이 종료되어 18년에 이르고 있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9년째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매립장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매립장 해충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검토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정용 방역약품을 주변마을에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은 사후관리 중인 문암매립장과 관련한 해충으로부터 주변마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정용 방역약품의 지급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권고합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6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시정		

【제 목】 시효소멸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관리 소홀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73조(강제징수)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31조(가산금 및 독촉)
제33조(소멸시효), 제34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현 황】

- 하수도사용료 시효소멸 완성 체납액 현황

(단위 :명/건/원)

수용가명	수용가주소	업종	횟수	체납시작	체납끝	체납합계	비 고
8명			129			24,399,970	
***	문화동 ***	일반용	20	20120630	20140930	707,710	체납분리
***	용암2동 ***	대중탕용	3	20121231	20140930	5,490,030	체납분리
***	복대2동 ***	대중탕용	6	20110430	20111130	1,693,940	폐전
***	봉명1동 ***	일반용	46	20060131	20140831	6,238,000	폐전
***	봉명2동 ***	일반용	11	20140228	20141231	620,320	체납분리
***	가경동 ***	일반용	20	20130131	20140831	4,938,810	체납분리
***	우암동 ***	일반용	16	20130831	20141130	3,087,480	체납분리
***	율량동 ***	혼합용	7	20100831	20110630	1,623,680	폐전

【지적내용】

하수정책과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에서 매월 상수도 전산프로그램(WIMS)으로부터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업종에 따라 1단계~4단계까지 차등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자는 자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 부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하수도법」 제73조(강제징수 등),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1조(가산금과 독촉), 제33조(소멸시효), 제34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에 따르면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3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하수정책과에서는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이행하거나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한 시효소멸 3년이 완성된 체납액 8명/129건/24,399천원에 대하여 감사당일까지 결손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하수도 사용료 시효소멸 체납액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액 129건/24,399,97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수사용료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7				
소z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시정		

【제 목】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관리 소홀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제30조(가산금)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청주시 지하수 조례」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9조(가산금)

【현 황】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내역

(단위 :명/건/원)

부 서	회계과목	체 납 내 역			비고
		인 원	건 수	체 납 액	
하수정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82	2,096	81,286,740	

※별첨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세부 내역 1 부

【지적내용】

하수정책과에서는 매월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이용자의 사용량을 상수도 전산프로그램(WIMS)으로부터 다운받고,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용 지하수의 경우 청주시 지하수 조례 제17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m³당 85원을 부과·징수 하고 있다.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청주시 지하수 조례」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따르면 시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 「지방세 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하수정책과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자가 독촉장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하지 않았을 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부터 2018년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구순회 외 81명의 체납액 81,286천원에 대하여 독촉 절차를 완료한 후 감사당일까지 체납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독촉이 완료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중 재산소유자는 즉시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무재산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취득 시 체납처분 할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8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시정		

【제 목】 폐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소홀

【관련규정】

- 「물환경보존법」 제48조의 2((공공폐수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청주시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8조(부담금 납부)
제24조(독촉 등), 제25조(강제징수)

【현 황】

(단위 : 원)

회계과목명	회계연도	납부자	부과대상	최초 납기일자	체납금액
합 계		2명			5,116,390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2014	***	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 (주성리 ***, 11.56톤)	2014. 12.31	2,558,190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2014	***	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 (주성리 ***, 11.56톤)	2014. 12.31	2,558,200

【지적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공공폐수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8조(부담금 납부), 같은 조례 제24조 독촉 등), 제25조(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하수정책과에서는 *** 외 1명이 청원구 **리 ***번지의 폐수처리시설관련 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 5,116,390원에 대하여 독촉을 완료하였으나 세외수입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세정과-16111(2017. 11. 14))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 발견되었는데도 감사당일까지 압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자원정책과장은 독촉이 완료되고 전국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9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시정	추징/ 2,585,060원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불용액 조치 소홀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20조,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내지 제39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불용액 미조치내역

(금액단위 : 원)

적 요	수납(발생) 일자	반환기일	소멸시효 경과여부	금액	비고
2건				2,585,060	
봉급 가압류	2002.01.18.	압류 해제 시	여	1,219,060	세입조치
지하수 이행보증금	2002.06.12.	복구 완료 시	여	1,366,000	세입조치

【지적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발생 당시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하수정책과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2002년도 납부한 봉급 가압류 금액 1,219,060원과 지하수 이행보증금 1,366,000원 총 2건 2,585,060원은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는데도 반환 및 세입조치 등 정리하지 아니하고 2018. 6. 25. 감사일 현재 까지 이월하여 불용액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2년도에 납부한 봉급 가압류 금액 1,219,060원과 지하수 이행보증금 1,366,000원 총 2건 2,585,060원을 세입조치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0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	시정	회수/280,000원	

【제 목】 시설부대비 집행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등

【현 황】

○ 출장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예산 과목	출장월	출장목적	출장자	지급액	지급일	비고
계		1건		280,000		
시설 부대비	2018. 3월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출장여비	시설*급 ***	280,000	2018.04.02.	감독공무원으로 명령 받지 않음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 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으로 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할수 있지

만 감독명령을 받지 않은 시설*급 *** (2018. 3월 당시)에게 2018. 4. 2.에 1회에 걸쳐 280,000원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장은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시설*급 *** (2018. 3월 당시)에게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 여비 28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	주의	-	

【제 목】 건설공사 공정관리(공기연장 부적정)소홀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현 황】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남일면 일원
- 사 업 량 : 하수관거 L=29,185km
- 총 공사비 : 8,662백만원(도급액 5,368백만원, 관급액 3,2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06. 03. ~ 2018. 08. 10.
- 도 급 자 : (주) *** 대표 ***
- 감 리 자 : (주) *** 대표
- 현공정율 : 95.79%

【지적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85조(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 제91조(시공계획검토) 제6항에서는 축사 등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제94조(공정관리) 제3항에 따르면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계약 공기의 준수 여부, 공사 주변 여건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본 사업의 공기연장사유를 살펴보면 진입로 폐쇄에 따른 영업보상, 공사로 인한 가축폐사의 이유로 공기연장 처리한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이행사항(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한 인근 가옥 및 축사 피해방지대책 수립)과 상당기간의 공사기간(2015. 6. 3. ~ 2017. 6. 26.)임에도 영업보상 및 가축폐사로 인해 각각 6개월, 5개월 공기연장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기와 같은 공정관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2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체과	-	주의	-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아스콘 포장복구) 관리 소홀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현황】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남일면 일원
- 사 업 량 : 간선관로 L=5.92km, 차집관로 L=5.60km
- 총 공사비 : 8,051백만원(도금액 6,579백만원, 관금액 1,4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06. 03. ~ 2019. 09. 17.
- 도 급 자 : (주) *** 대표 ***
- 감 리 자 : (주) *** 대표 ***
- 현공정율 : 69.03%

【지적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제97조(설계변경 관리) 제1항, 제9항에서는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여건 조사 포함)을 하고,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제반서류(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시 말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공계획, 공정관리, 예산절감 등의 감독권한 대행의 건설사업관리가 주요업무이다.
- 그러나, 실정보고 승인과정을 살펴보면, 지방도(32호선) 사업구간 중 L=1,400m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에서 정한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설계 : 표층 5cm+기층 10cm, 현장 : 표층 5cm+기층 25cm)에 해당되어 도로점용 허가조건 중 원상복구의 이유로, 당초 현장과 동일한 두께로 시공하는 실정보고 건이 시공사(제출)⇒건설사업관리기술자(검토·확인)⇒발주청(승인)의 절차를 거친 사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짐관리 등 평탄성 확보로 당초 설계로도 시공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구한 원상복구에 이르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¹⁾가 없이 발주청에 제출하여 당초 설계보다 기층두께 증가분(10cm⇒25cm) 시공에 따라 공사비가 87,990천원(제경비 포함) 증액된 사실이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구된 원상복구에 이르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확인(설계상 : 포장단면 구조 및 두께 등, 시공상 : 다짐도 확보에 따른 평탄성 확보 등)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기와 같은 원가관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	시정	감액 5,650,000원	

【제 목】 건설공사 부대공(세굴방지블록) 과다설계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주요 현황】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원
- 사업량 : 오수간선관로 L=3.167km
- 총 공사비 : 3,999백만원(도금액 3,395백만원, 관금액 6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2. 22. ~ 2019. 2. 14.
- 도 급 자 : (주) *** 대표 ***
- 감 리 자 : (주)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 현공정율 : 75%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본 사업의 설계내역 상 부대공사로 하천구역 세굴방지 기능의 사석부설(50.4m³)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세굴방지블록(50.4m³)이 중복으로 계상되어 5,65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상기 과다 설계 분 5,65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4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	시정	감액 11,600,000원	

【제 목】 건설공사 부대공(가물막이) 과다설계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주요 현황】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남일면 일원
- 사업량 : 간선관로 L=5.92km, 차집관로 L=5.60km
- 총 공사비 : 8,051백만원(도금액 6,579백만원, 관금액 1,4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06. 03. ~ 2019. 09. 17.
- 도 급 자 : (주)*** 대표 ***
- 감 리 자 : (주)*** 대표 ***
- 현공정율 : 69.03%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본 사업의 현장여건상 하천횡단 가물막이 목적으로 75m³규모의 PP 마대 쌓기 및 헐기(10회)가 불필요함에도 설계내역 상 11,6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상기 과다 설계 분 11,60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액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5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체과	-	주의	-	

【제 목】 건설공사 착공신고서(품질시험계획서 등) 검토소홀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주요 현황】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원
- 사 업 량 : 오수간선관로 L=3.167km
- 총 공사비 : 3,999백만원(도금액 3,395백만원, 관금액 6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2. 22. ~ 2019. 2. 14.
- 도 급 자 : (주)*** 대표 ***
- 감 리 자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 현공정율 : 75%

【지적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제8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품질 시험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

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영 제99조 시행규칙 제58에 의거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또한, 동 지침 제96조(환경관리)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 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청(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에 제출한 2018. 2. 9.자 착공신고서(전체분 및 1차분) 검토보고서 확인결과, 시공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가 미 제출되어 착공신고서의 구비서류가 미흡함에도 2018. 2. 26.자 착공신고서 검토보고서에는 공사예정 공정표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 졌을 뿐, 상기 품질·안전·환경 계획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누락되어 공사착수 단계 현장관리가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기와 같은 착수단계 현장관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6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	개선	-	

【제 목】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록 등 관리소홀

【관련규정】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주요 현황】

사 업 명	토석량(㎥)	공사비(천원)	정보관리주체 및 사용자 등록 여부	비 고
계	74,409	347,704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1,387	55,048	부	사토
가덕 하수관거 설치공사	31,734	92,108	부	사토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사업	4,149	24,647	부	사토
가마석판 하수관거 정비사업	8,769	33,453	부	사토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691	12,109	부	사토
석화서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3,143	15,516	부	사토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49	16,948	부	사토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9,187	97,875	부	사토

【지적내용】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해양부 고시. 2012. 6. 21.시행)」 제4조(적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며, 일반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6조(정보관리 주체) 및 제7조(업무이관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르면 발주기관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발주기관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 감리(現.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정보관리 및 활용의 권한을 이관할 수 있고,
- 제8조(사용자 등록 등) 및 제9조(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에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사용자 등록, 토석 관련 입력 및 갱신 등의 시기를 정하고 있다.
-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정보관리 주체, 업무이관 및 담당자변경, 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실상 발주기관 담당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상기 사업의 설계 및 시공 상 발생한 토석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관리 주체, 사용자 등록, 토석 관련 입력 및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저해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장은 발주기관 담당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업 담당자 등)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활용함으로써 토석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7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주의		

【제 목】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중수도 수질검사 관리 소홀

【관련규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4.5)』 《중수도》

【현 황】

- 중수도 시설의 수질검사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구분	최종 수질검사일	적합 여부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	숙박시설	2015.5.27	적합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	공장	2016.11.3	적합

【지적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폐수배출량이 1,500㎥/일 이상인 시설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60,000㎡이상의 시설물 등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결과통보서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부의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중수도》Ⅲ. 2. 가. 에서도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기별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2개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또한 같은 지침 《중수도》Ⅳ. 2. 가. 에 따라 중수도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한 바 있다.
- 하수정책과에서는 중수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소정의 수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의해 관리가 필요함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통보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그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했음에도 행정지도만 하고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장은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중수도의 수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수질 관리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8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개선		

【제 목】 공사 및 용역 계약업무 등의 조달청 업무대행 요청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 제15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황】

- 공사 및 용역 계약업무 등의 조달청 업무대행 요청 40건

【지적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1억원 이상)를 구매하거나 공사[30억원(전문 3억원)이상]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장이 계약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조달청장에게 계약관

련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수요기관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 및 계약 집행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계약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그런데 하수정책과에서는 「***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9건의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하면서 계약업무에 대하여 직접 집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달청장에게 업무대행을 요청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달수수료 1억4천5백여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에서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업무대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회계부서와 사전협의 및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검토결과를 반드시 비치하는 등 업무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이후 무분별한 업무대행 요청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9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시정		

【제 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위·수탁 협약 부적정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 『하수도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현 황】

- 『2017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청주시 내덕, 석남천 배수 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위·수탁 협약
 - 협약체결일 : 2018. 2. 28.
 - 위 탁 기 간 : 2018. 2. 28. ~ 2021. 10. 예정(사업완료시)
 - 위 탁 자 : 청주시장
 - 수 탁 자 : *****
 - 위탁범위 : 설계 및 사업시행 일체
 - 예상사업비 : 약 719억원
 - 위탁수수료 : 약 29억원

【지적내용】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시의 책무) 제4

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조례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시의 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하수정책과에서는 『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내덕, 석남천 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시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정책과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과의 위·수탁 협약 내용에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반드시 준수하도록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 사업추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0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시정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교육 소홀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67조(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교육)

【현 황】

- 운영요원 교육훈련 현황

(단위 : 명)

운영요원	교육이수현황		비고
	여	부	
43	27	16	

【지적내용】

- 『하수도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교육)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이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에서는 감사일(2018.6.29일)

현재 교육대상자 43명중 16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등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시정		

【제 목】 공금관리 통장(계좌) 개설 부적정

【관련규정】

-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8조제3항
-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4호

【현 황】

- 공금관리 통장(계좌) 개설 부적정내역

(금액단위 : 원)

통장 용도	사용인감	계좌번호	정당 통장 개설	
			근거	사용인감
내수분뇨처리 사용료 수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농협 301-***-***-***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하수도사업 분임수입원인
내수가축분뇨 사용료 수입		농협 301-***-***-***		
레고파크 사용료 수입		농협 301-***-***-***		
청주분뇨 사용료 수입		농협 301-***-***-***		

【지적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

○ 따라서, 각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분임수입원 회계관직을 이용해 공금통장을 개설하고 통합 관리하여야 했다.

○ 하지만, 하수처리과에서는 각 분뇨처리시설별 사용료 수입 관리통장을 분임수입원 회계관직으로 통합 개설하지 아니하고 위 현황과 같이 임의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회계관직을 사용하여 내수분뇨외 3개소 각 분뇨처리시설별 사용료 수입 및 지출 통장을 개별 개설·운영하는 등 공금관리통장(계좌) 개설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처리과장은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으로 개설한 내수분뇨 외 3개소 시설별 사용료 수입 및 지출 통장 4개를 해지하고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 관리통장을 분임수입원 회계관직으로 통합 개설하여 사용하기 바라며,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2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시정	추징 2,318,930원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20조,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내지 제39조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일시보관금 미조치내역(2018.06.25.현재)

(금액단위 : 원)

적 요	수납(발생) 일자	금액	비고
9건		2,318,930	
2016년 하반기 이자발생금	2016.12.25.	4,820	세입조치
2016년 장기요양보험 정산액 환급금	2017.02.06.	118,260	세입조치 및 반환
2016년 건강보험 정산액 환급금	"	1,812,750	세입조치 및 반환
지하수 이용부담금 조정 환급금	2017.02.10	22,290	세입조치
2016년 고용,산재보험 정산 이자발생금	2017.06.23.	2,560	세입조치
2017년 상반기 이자발생금	2017.06.25.	100,840	세입조치
2017년 하반기 이자발생금	2017.12.24.	27,040	세입조치
차량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2018.06.12.	226,790	세입조치
2018년 상반기 이자발생금	2018.06.24.	3,580	세입조치

【지적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같은 규칙 제90조에 따라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또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발생 당시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했다.

○ 그런데, 하수처리과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일시 보관금 중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하반기 이자발생금 4,820원 등 총 9건 2,318,930원에 대하여 발생즉시 반환 및 세입조치 등 정리하지 아니하고 2018. 6. 25.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처리과장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보관금 중 2016년 하반기 이자발생금 4,820원 등 총 9건 2,318,930원에 대해 반환 및 세입조치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주의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증빙서류 편철 소홀

【관련규정】

-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31조 및 「계산증명규칙」 제12조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증빙서류 편철 소홀내역
 -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증빙서류를 별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증빙서류와 합철

【지적내용】

○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회계문서)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별지 제112호서식)임을 표시하고 표지를 붙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계산증명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 더불어,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 하지만, 하수처리과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에 관한 2016년, 2017년 회계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증빙서류와 합철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처리과장은 앞으로 지출증빙서류 편철 처리를 하면서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31조 및 「계산증명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증빙서류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증빙서류와 별도로 편철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4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	주의	-	

【제 목】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집행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현 황】

- 2017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처리량 및 처리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약 일자	계약물량 (톤)	계약금액	처리물량 (톤)	지급액	처리(운반)업체
계(4건)		28,000	3,459,398	32,489.66	4,005,408	
1차(입찰)	2017. 03.16	6,000	753,060	7,938.53	996,364	***,***,***,***
2차(입찰)	2017. 07.04	6,000	747,738	6,562.79	817,874	***,***,***,***
3차(입찰)	2017. 09.06	10,000	1,209,500	14,018.71	1,695,562	***,***,***,***
4차(입찰)	2017. 11.29	6,000	749,100	3,969.63	495,608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
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처리를 위하여 2017. 3. 17. 입찰을 통하여 6,0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로 하고 753,060,000원에 처리(운반) 업체인 ***,***,***,***,과 위탁처리 계약을 맺었다.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공정 비정상 운영으로 슬러지 감량 저하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 하여 긴급예산을 편성, 2차는 2017. 7. 4. 6,000톤 747,738,000원에 ***,***,***,***,과, 3차는 9. 6. 10,000톤 1,209,500,000원에 ***,***,***,***,과, 4차는 11. 29. 6,000톤 749,100,000원에 ***,***,***,***, 2017년 총 4회에 걸쳐 계약물량 28,000톤 3,459,398,000원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사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 하지만, 위 현황과 같이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처리한 하수슬러지 처리량이 애초 계약물량 28,000톤 보다 4,489.66톤이 늘어나 32,489.66톤으로 증가하였지만 늘어난 슬러지 물량에 대하여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계약금액인 3,459,398,000원 보다 701,584,000원이 많은 4,005,408,000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하수 슬러지 물량이 늘어날 경우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5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	주의	-	

【제 목】 물품(경유) 통합발주 노력 미흡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등

【현 황】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매 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적요	계약 일자	계약 방법	지급액	거래처명	비고
계	8건			60,270,000		
동력비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6.16	1인수의 계약	4,920,000	***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6.20	“	6,150,000	***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6.21	“	6,150,000	***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6.27	“	8,610,000	***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6.30	“	8,610,000	***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7.05	“	8,610,000	***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7.05	“	8,610,000	***	
“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 준공금 지급	2017. 07.14	“	8,610,000	***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Ⅲ장.세출

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통합 발주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6. 14.부터 7. 14. 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보일러 가동용 경유 8건 60,270,000원을 구입하면서 통합 발주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한데도 보일러 가동이 긴급하다는 사유로 각각 따로 나누어 발주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입시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일러 가동용 경유 구매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6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	주의	-	

【제 목】 계약서 작성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현 황】

- 입찰건중 서면계약 현황

(단위 : 원)

적요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방법	도급자	비고
계(4건)	2,606,432,400				
청주하수처리장 소각 시설물시설(1,2호기) 부생연료유 1호 구매	516,953,000	2018. 01.25	서면 계약	***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이 지정하는 정보처리 장치 이용하여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함
2018년도 청주시 A 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변경)	269,900,400	2018. 01.15	“	***	“
2018년도 청주시 B 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변경)	277,267,000	2018. 01.15	“	***	“
2018년도 청주시 내수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변경)	1,542,312,000	2018. 01.25	“	***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 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

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청주하수처리장 소각시설물 시설(1, 2호기) 부생연료유 1호 구매 등 4건 2,606,432,400원을 계약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도급자의 전자문서 계약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서면 계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입찰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7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주의1	주의	-	

【제 목】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소홀

【관련규정】

○ 청렴도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 관련공문 ⇨ <회계과-17762(2015.07.09) 및 감사관-6799(2015.7.9.)>

【현 황】

○ 2016년 공사(물품) 1000만원 이상 5건이상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자	비고
계(7건)	107,321,000			
고압송풍기 수선용 임펠라 축 구입	14,500,000	2016.01.20	***	
2단계 생물반응조 고압송풍기 3호기 수선(준공금)	16,971,000	2016.02.19	***	
2단계 생물반응조 고압송풍기 1호기 수선	17,800,000	2016.04.12	***	
제1소각로 송풍기류 수선	14,850,000	2016.05.24	***	
제1소각로 유인송풍기 수선	17,100,000	2016.06.30	***	
제1소각로 건조기용 송풍기외2종 수선	12,400,000	2016.07.25	***	
소각로 유입동 유인송풍기 임펠러 구입	13,700,000	2016.09.08	***	

【지적사항】

○ 우리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맑은고을 청렴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방계

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 규정 범위내에서 “청렴도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관련공문 ⇨ <회계과-17762(2015.07.09) 및 감사관-6799(2015.7.9)>

○ 위 제도는 회계 관서별 연간 1개업체 5건 초과계약 제한을 두는
수의계약 상한제(공사, 물품인 경우1건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 ~ 2천
만원 이하인사업) 등, 수의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
러가지 개선대책을 담고 있으며, 또한 동일업체와 장기연속계약 및
몰아주기식 집중 수의계약으로 부패 개연성과 지역업체들의 균등한
기회 박탈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 7. 9.부터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천만원
이상 고압송풍기 수선용 임펠라 축 구입 등 7건 107,321,000원을 ***
와 계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 수의계약제도 규정을 준
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청렴도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회계과-17762(2015.07.09) 및 감사관-6799(2015.7.9.)>를 준수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금번에 한하여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공무원】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행정*급 ***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8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주의		

【제 목】 계약 대가 지급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소홀

【관련규정】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현 황】

- 계약 대가 지급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소홀 현황
(단위 : 원)

적 요	지급일자	지급금액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여부	계약상대자
계(4건)		70,446,960		
하수처리 유량계 교정 검사 용역 준공금 지급	2017-12-06	15,000,000	부	***
오창폐수처리시설 송풍기 제어반 교체 준공금 지급	2017-12-06	16,200,000	부	***
하수슬러지감량화 무기고분자응집 제 구입(PAC) 준공금 지급	2018-01-15	19,800,000	부	***
소각시설 보조연료 부생유 구입	2018-01-18	19,446,960	부	***

【지적내용】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의 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한편, 회계과에서는 계약대금 지급 시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제도 알림 공문[회계과-9339(2016.4.1.)]을 시한하전부서로 통보하였다.

○ 따라서, 하수처리과에서는 각종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러나,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처리 유량계 교정 검사 용역 준공금 지급’ 등 4건, 70,446,960원의 계약 대가를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조치할 사항】

○ 하수처리과장은 앞으로 각종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바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9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주의		

【제 목】 분임지출원 부재중 회계관직 대리 미지정

【관련규정】

-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
-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현 황】

- 지출원 대리 미지정 지출현황

(단위:원)

연 번	지출원 부재일	적 요	집행금액	지출승인	지출원 대리지정 여부
	계	2건	363,648,580		
1	2018-01-10	2017. 12월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납부	363,028,580	분임지출원	부
2	〃	취약지근무자 식사제공용 식자재구입비 지출(1월-가***,***,***,***)	620,000	분임지출원	부

※ 지출원 연가(휴가)일 : 2018. 1. 10.

【지적내용】

- 「지방회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분임지출원은 각 부서 지출담당 팀장이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부서장 및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하수처리과에서는 분임지출원인 지출담당 팀장이 연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장이 분임지출원에 대한 회계관직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세출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다.

○ 하지만, 하수처리과에서는 분임지출원인 지출담당 팀장 “****”이 2018. 1. 10일에 연가로 부재중이었는데도 분임지출원 회계관직 대리지정 없이 분임지출원 명의로 총 2건 363,648,580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처리과장은 앞으로 분임지출원이 연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 및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원에 대한 회계관직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향후 분임지출원 회계관직 대리지정 없이 분임지출원 명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40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주의		

【제 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1. 신용카드 사용 관리 소홀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미공개 현황

(단위 : 원)

지출과목	적 요	사용일자	사용금액	채 주
	계(8건)		11,720,360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구입 관용카드 결제 대금 지급	2017-03-23	1,275,800	***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관용카드결 재금액 지출	2017-08-03	1,257,000	***
공공운영비	중기덤프차량수리 관용카드결 재대금 지출	2017-10-17	1,185,800	***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관용카드결제 금액 지출	2017-10-24	1,100,000	***
공공운영비	준설차량 하부고장 수리에 따 른 관용카드결제금액 지출	2017-10-27	1,220,000	***
공공운영비	준설차량 타이어 구입 관용카 드결제금액 지출	2017-11-15	3,100,000	***

지출과목	적요	사용일자	사용금액	채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방객 접대 및 직원 음용커피 등 구입 관용카드결제대금	2018-03-21	653,760	***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관용카드결제 금액 지출	2018-04-26	1,928,000	***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소홀

○ 매월 1회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결제 누락 : 2015.10월~2018.4월

【지적내용】

1. 신용카드 사용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따라서, 하수처리과에서는 지출원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했다.

○ 그러나, 하수처리과에서는 2018년에 사용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건과 2017년과 2018년에 사용한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7건 등 총 8건 11,720,360원에 대해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하여야 하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하수처리과에서는 매월 1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과장까지 결재 하여야 했다.

○ 그러나, 하수처리과에서는 2015. 10월부터 2018. 4월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하지 않아 과장까지 결재하지 않는 등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하수처리과장은 앞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 신용카드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매월 1회 행정전산망에 공개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여 주시고

○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과장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4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개선		

【제 목】 하수슬러지 운반용 벨트컨베이어 운영관리 미흡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관리 책임)

【현 황】

- 하수슬러지 운반용 기계장치 설치실태(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구 분	설치 내용	운영 실태	비 고
벨트 컨베이어	• 기능 : 탈수슬러지의 저장조 이송 • 설치 : 2016. 6. 30 ~ 2017. 4. 13 • 규격 : 트로프형 벨트 컨베이어 (이송량 8m³/hr 이상, W0.6m × L18m) • 사업비 : 438,000천원	• 예비 탈수슬러지 저장조 이송 설비로 활용	
탈수슬러지 압송설비	• 기능 : 탈수슬러지의 저장조 이송 • 설치 : 2016. 12. 29 ~ 2017. 2. 27 • 규격 : 압송펌프 22KW, 압송관 300A (이송량 13m³/hr) • 사업비 : 143,700천원	• 주 탈수슬러지 저장조 이송 설비로 활용	

【지적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흥덕구 옥산면 소재 청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내에 추진한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슬러지감량화 사업”의 설치 장치중 하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탈수하여 이를 “열가수분해를 통한 고온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시공된 열가수분해 장치로 이송하기 위해 벨트 컨베이어를 지난 2017년 4월 설치하였으나,
- 이 벨트 컨베이어가 외부공간에 노출되어 동계에 이송효율이 떨어지고, 벨트 컨베이어의 설치 경사각이 슬러지 저장조의 높이 등 현장여건의 불가피한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높아져(20°→32°) 탈수율에 따라 슬러지의 일부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슬러지 탈수동에서 슬러지를 펌프로 압송하여 슬러지 저장조에 이송하는 압송설비를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 경동엔지니어링)의 의견을 들어 예비로 2017년 12월에 추가 설치하였다
- 이후, 이 압송설비가 슬러지 이송에 벨트 컨베이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자, 이를 주 슬러지 이송장치로 활용하고, 당초 설치된 벨트 컨베이어는 예비 이송장치로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없다.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는 일시적인 압송설비의 고장발생을 고려해 유지하고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운전을 하는 등 시설의 안정적 성능유지를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하여야 했으나, 위 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벨트 컨베이어 제반 시설 보완, 주기적 시험운전 등을 통해 장치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방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42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주의		

【제 목】 분뇨처리장 악취포집시설 운영관리 미흡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 및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현 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분뇨처리장 악취 포집시설
 - 위 치: 하수처리과 분뇨처리장 입구
 - 총사업비: 310,000,000(삼억천만 원)
 - 착 수: 2017. 08. 11.
 - 납품완료: 2017. 12. 02.
 - 설치내역: 폴리카보네이트 698m², 자동개폐기 2개소, 창호 8개소, 자동셔터기 3개소 등

【지적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에서는 인근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분뇨처리장 입구에 천장 개폐형 악취포집시설을 2017년 12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악취포집 시설은 밀폐된 상태에서 분뇨수집 운반차량이 통과 시 자동고속셔터가 개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과적인 포집과 탈취로 악취가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악취포집시설의 지붕 자동개폐기 2개소, 창문 8개소, 고속셔터기 3개소 창호 중 창문 8개소를 열어 놓고 운영하고 있어 분뇨악취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 이는 악취포집 시설을 정상운영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악취포집시설 관련자(운영자, 분뇨수집운반차량 기사)에게 시설에 대한 설치목적 및 운영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후 사후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4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주의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미준수 등 관리 소홀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제2조제2호

【현 황】

-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받은 사항

위반일	과태료 (천원)	개선완 료일	초과 항목	수질 기준 (mg/L)	측정치	초 과 원 인
16.1.28 ~2.1	4,000	16.3.17	T-N	20	20.506 ~22.356	· 제1단계 탈수동 슬러지 이송벨트 고장으로 탈수 기가동중지 ⇒ 연계처리수조 오버플로우(고농도 반류수 유입으로 인한 생물반응조 미생물 쇼크)
16.9.18 ~19	5,000	16.9.22	T-P	0.3	0.359 ~0.975	· 추석연휴기간(5일)중 연속된 강우로 유량·유속증 가에 따른 체류시간이 짧아져 누적된 인 슬러지 부상 및 유출로 수질기준 초과
17.3.4 ~3.5	5,000	17.4.18	T-N	20	20.214 ~25.184	· 생물 반응조 내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한 미생물 활동성 저하로 질소 제거효율 저하 · 저수온(11℃)과 신재생에너지화 및 슬러지 감량화 시설에서 발생한 반류수의 고농도질소 증가로 생 물학적 처리효율이 저하됨

위반일	과태료 (천원)	개선완 료일	초과 항목	수질 기준 (mg/L)	측정치	초 과 원 인
17.9.25 ~27	5,000	17.10.2 6	T-P	0.3	0.372 ~1.658	· 혐기조의 인 방출이 증가하여 호기조에서 인 처리효율 감소 · 2차침전지 방류수 PO4-P농도 급격한 증가 (자동 측정기기 최대값 초과-2.5mg/L이상, 수분석값 3.0mg/L이상)로 총인처리시설 T-P 제거율 감소
18.1.3	5,000	17.124	SS	10	10.8 ~13.2	· 총인 처리시설 경사판 침전지 청소(1~6지중 1,2지) 실시 · 체류시간 감소로 침전지 슬러지 유실발생
18.1.10	5,000	18.1.29	T-P	0.3	0.382 ~0.971	· 생물 반응조 미생물이 원인 불명의 독성물질 또는 충격부하 유입으로 인한 미생물이 충격을 받아 처리효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차침전지 방류수 PO4-P농도 급격한 증가로 총인처리시설 T-P 제거율 감소
18.1.16	5,000	18.2.5	T-N	20	20.711 ~24.747	· 생물 반응조 미생물이 수온저하에 따른 충격을 받아 처리효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질산화율 감소로 암모니아성질소 증가 및 질산성 질소 감소

【지적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하수처리과에서는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에 소재하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2016년 이후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항목에 대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바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총7회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 2018년 1월에는 총인 처리시설 경사판 청소, 생물반응조의 미

생물이 원인 불명의 독성물질 또는 충격부하 유입, 미생물의 수온저하에 따른 충격과 같은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3회 연속 개선명령을 받았다.

- 환경부에서는 금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8년 현재 금강수계를 금본F, 금본G, 금본H, 미호B, 미호C로 나누어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2016~2020)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총인(T-P)에 대하여 할당부하량 590.722kg/일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 총7회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항이 총량관리제도에서의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곳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미호B 단위유역으로 생활계, 산업계 할당부하량(166.249kg/일) 대비 환경기초시설의 부하량(70.795kg/일) 점유율이 42%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오염원으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위구역으로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방류수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장은 시설운영과 공정운영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팀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되 상호 협조하여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영향이 없도록 방류수 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주의4	시정		

【제 목】 청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청주랜드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설현황】

- 어린이회관 : 대지 52,090㎡, 건물 13,521㎡, 주차장 11,422㎡
 - 주요시설 : 본관, 제1·2·3전시관, 생태관, 휴게시설
- 동 물 원 : 대지 104,786㎡, 건물 2,735㎡, 주차장 11,160㎡
 - 주요시설 : 호랑이사 외 34동, 휴게시설
 - 동물현황 : 103종 535마리
- 유희시설 : 5종 36대
- 관용차량 : 3대 / 임차차량 : 1대

【지적사항】

「청주랜드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1-11 분장사무 에도 “관람객의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업무로

되어 있는데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정문에서 바리게이트만 설치한채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 2017. 7. 11 차량통제에도 불구하고 차량 3대가 청사내 유희공간에 주차 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화장실에서 분기한 수도관에 고압펌프를 연결해 놓고 광택제, 코팅제, 마대걸레등 세차용품을 이용해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세차를 한 사실도 확인 되었다.

또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물품이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한 후 매각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압펌프 2대중 1대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데도 수리 또는 매각, 폐기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시설물의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정문에서 차량통제를 보다 철저히 해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차에 사용했던 고압펌프는 동물원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한편 화장실에서 분기하여 차량 세차에 사용했던 수도관은 폐쇄시키기 바랍니다.

또,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고압펌프는 불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에 한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니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 하기 바랍니다.

【관련공무원】

- | | |
|----------------------|-------------|
|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행정*급 *** | 【주의】 |
|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행정*급 *** | 【주의】 |
|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농업*급 *** | 【주의】 |
|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원경찰 *** | 【주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주의		

【제 목】 당직명령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현 황】

근무일시	당초근무자		대직근무자 (임의변경)		결재자	비 고
	직	성 명	직	성 명		
2018.6.2.(토)	농업*급	***	수의*급	***	소장 ***	문서수정액으로 대직자 임의변경
2018.4.15.(일)	전기*급	***	공업*급	***		
2018.6.,20(수)	농업*급	***	공업*급	***		
2018.6.22.(금)	농업*급	***	공업*급	***		
2018.4.1.(일)	농업*급	***	농업*급	***		
2018.3.17.(토)	기계운영*급	***	공업*급	***		
2018.3.27.(화)	청원경찰	***	농업*급	***		
2018.3.28.(수)	농업*급	***	수의*급	***		
2018.2.25.(일)	농업*급	***	수의*급	***		

【지적내용】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에 보면,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관부서 과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대리근무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당직명령대장의 근무자를 문서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임의로 대리근무자를 기재해서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당직명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기 바라며, 당초 명령받은 근무자를 문서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임의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시정		

【제 목】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현 황】

생산등록번호	공문서 제목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비 고
청주랜드-5098(2018.06.27.)	동물원 입장료 수입금 현황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6호	개인정보	
청주랜드-5115(2018.06.28.)	2018년 화훼류 재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계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7	내부계획	
청주랜드-12399(2017.12.28.)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직무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5호	내부사항	
청주랜드-12346(2017.12.26.)	사육일지(포유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7	내부결재	
청주랜드-12333(2017.12.26)	어린이회관저수조및 상하수도 점검일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5호	내부검토	
청주랜드-12334)2017.12.26.(	동물원저조및상하수도점검일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5호	내부검토	

생산등록번호	공문서 제목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비고
청주랜드-5072(2018.06.26.)	2018 7월 휴일·당직 근무 명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5호	내부계획	
청주랜드-12328(2017.12.26.)	동물반입 결과보고서) 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6호	내부결재	
청주랜드-12266(2017.12.24.)	냉난방기계설비 안전 점검일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7	정보보호	
청주랜드-12278(2017.12.26.)	선진시설 견학추진 결과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6호	개인정보	
청주랜드-12277(2017.12.26.)	생태관 환경정비 조성 결과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6호	내부결재	

【지적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도 정보공개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휴일·당직근무 명령 등 10건의 생산문서에 대하여 공개대상 문서인데도 내부계획, 개인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문서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공개대상 문서임에도 비공개 문서로 관리해 오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문서로 전환조치 하기 바라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4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주의		

【제 목】 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구)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현 황】

소 속	직 급	성 명	기 간	신청 종별	정상 처리	사 유	비 고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농업 *급	***	2017.12.15. 14:00~18:00	공가	특별 휴가	어린이집 행사	

【지적사항】

(구)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특별휴가) 6항에 보면,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농업*급 ***은 어린이집 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별휴가 대상을 공가로 신청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5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개선		

【제 목】 청주동물원 사육동물현황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청주시 청주동물원 동물관리 규정』 제5조, 제6조, 제14조

【현 황】

- 청주시 청주동물원 동물현황

2018. 6. 30일 현재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비고
종	마리수	종	마리수	종	마리수	종	마리수	
93	518	37	165	48	338	8	15	

【지적내용】

- 『청주시 청주동물원 동물관리 규정』 제5조(대장등재), 제6조(카드등재)에 의하면 사육동물은 수용과 동시에 각 분류별로 시험사육대장에 등재하고 시험사육 및 포육·육추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동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육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인 “동물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 『청주시 청주동물원 동물관리 규정』 제14조(보고 및 평가)에 의거 사육동물의 증감현황을 분기별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부터 전시동물의 기초자료 수집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물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고, 노후화된 프로그램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2017년도 12월 『동물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 제작 구입 계획』을 수립, *** (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운영버전을 업그레이드하였다.
- 그러나, 동물원에서 추가 및 개선하고자 하는 기능 등 자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한 과업지시서 등이 없이 계약을 체결, 구매 제작을 진행하여, 사육동물의 증감현황 기본 자료추출 및 보고를 위한 기본통계 등 프로그램의 기능개선이 미비함에도 로고변경 및 동물분류 수정, 검색기능 변경 등 단순 기능개선만을 완료한 채 2017년 12월 15일 *** (주)가 제출한 완료보고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다.
- 또,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관리하고 있는 동물현황에 대하여도 사육담당자의 사육일지 상의 사육현황과 동물관리프로그램의 자력관리 현황, 분기별로 작성된 사육동물의 증감현황을 비교한 결과, 기재된 동물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 다른 수치를 나타내는 등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현황에 대한 기록·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사육·관리하고 있는 동물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육동물의 현황을 재정비하고, 개체 수에 대한 자료추출 및 기본통계 등 기존 완료한 “동물관리시스템”에서 미비한 사항이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6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시정	부과 / 860,330원	

【제 목】 사용허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 허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현 황】

-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

(단위 : m²)

사용허가 재산명	총면적	사용수익 허가면적	기 간	계약일자	사용자
어린이 회관 매점	28	28	2015.12.01. ~2018.11.30	2015.11.01	***
동물원 매점	27	27	2017.05.20. ~2020.05.19	2017.04.17	***
제3전시관 3층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	3849	913.78	2018.01.01. ~2018.12.31	2018.01.01	***
제3전시관 3층주식회사에듀크리안트	3849	18.23	2018.01.01. ~2018.12.31	2018.01.01	***
본관 유희시설	10307	2150	2016.06.06. ~2019.06.05	2016.05.18	***

【지적내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어린이회관 매점 외 4개 시설 및 시설물의 사용자를 선정하여 수익을 허가하고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다.

1. 사용허가시설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미부과

○ 시설물재해복구 공제비 미부과 현황

(단위 : m²/원)

재산의 표시			2017년		2018년	
시 설 명	총면적	허가면적	공제비	안분금액	공제비	안분금액
계	18060	3137.01	2,526,070	383,190	3,233,680	477,410
어린이 회관 매점	28	28	5,000	5,000	5,000	5,000
동물원 매점	27	27	14,120	14,210	15,010	15,010
제3전시관 3층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	3849	913.78	907,690	215,490	1,216,510	288,800
제3전시관 3층주식회사에듀크리안트	3849	18.23	907,690	4,240	1,216,510	5,760
본관 유희시설	10307	2150	691,570	144,250	780,650	162,84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 인 것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청주시 회계과에는 2012. 1월부터 청주시 공유재산 중 건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매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재산에 비례하여 청주시가 부담한 공제비를 안분하여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대부재산 5곳의 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분 383,100원, 2018년도분 477,410원 공제비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사용허가시설 대부료 징수 소홀

○ 2018년 사용시설 대부료 납부 내역

(단위 : m²/원)

사용허가 재산명	총면적	사용수익 허가면적	기 간	계약일자	대부료	납부일
어린이 회관 매점	28	28	2015.12.01. ~2018.11.30	2015.11.01	33,235,780	2017.11.27
동물원 매점	27	27	2017.05.20. ~2020.05.19	2017.04.17	60,349,990	2018.05.21
제3전시관 3층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	3849	913.78	2018.01.01. ~2018.12.31	2018.01.01	13,454,740	2018.01.31
제3전시관 3층주식회사에듀크리안트	3849	18.23	2018.01.01. ~2018.12.31	2018.01.01	595,130	2018.01.31
본관 유희시설	10307	2150	2016.06.06. ~2019.06.05	2016.05.18	164,030,160	2018.06.04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맨 처음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로부터 하되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계속대부의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맨처음 연도는 계약한날로부터 60일까지, 2차 연도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징수하여야 하나 계속대여시설물인 어린이 회관 매점은 사업개시일 4일 전, 동물원 매점 외 1개는 사업개시일 이후에 대부료를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주시가 납부한 시설물의 재해복구공제비를 사용수익허가를 승인한 어린이회관 매점 외 5개의 대여공유재산에 사용면적별로 안분한 공제비 383,190원을 부과하고

○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규정을 준수하여 맨처음 연도는 계약한날로부터 60일까지, 2차 연도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징수하시기 바람

○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대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7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시정		

【제 목】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현 황】

- 시효소멸 세외수입 미결손 내역

회계과목	회계연도	납부자명	최초납기 일 자	체납금액	전국재산조회	
					1차	2차
그외수입	2013	(주)***	2013.04.01	1,582,080	2013.07.19. (무재산)	2018.06.04. (무재산)

【지적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적용)에 따르면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실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2013년 동물중개업체인 (주) ***와 동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1,53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법인의 부도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체납액 1,582,080원(가산금 46,080원 포함)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시효소멸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감사당일까지 결손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세입수입 체납액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며 시효소멸 완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8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시정		

【제 목】 청백-e시스템(지방재정) 상시모니터링 추출자료 처리소홀

【관련규정】

○ 「청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황】

○ 청백-e시스템(지방재정) 상시모니터링 추출자료 미승인 현황

예방프로그램명	모니터링 처리일자	승인기한	신용카드번호	승인금액	내 용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 · 과오납 등 방지	2018-04-15	2018-04-24	4140114414882466	2,690,020	대금지출
	2018-04-15	2018-04-24	4140114414883340	5,888,960	대금지출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2018-06-22	2018-07-03	4140114414883340	1,339,20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6-22	2018-07-03	4140114414882466	1,219,60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6-11	2018-06-21	4140114414883340	275,00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6-11	2018-06-21	4140114414883340	797,95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6-11	2018-06-21	4140114414883340	803,00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6-11	2018-06-21	4140114414883340	816,00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5-28	2018-06-07	4140114414882466	147,00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5-28	2018-06-07	4140114414883340	110,00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4-30	2018-05-10	4140114414883340	1,113,340	동물진료약품구입
	2018-04-15	2018-04-24	4140114414883340	490,600	동물진료약품구입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2018-06-25	2018-07-04	4140114414883340	450,000	휴일근무차
	2018-05-16	2018-05-28	4140114414883340	700,000	어린이날 행사

【지적내용】

○ 우리시에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 통제 일환으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청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청백-e시스템”이란 청주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부서에서는 매월 청백-e시스템(통합) 자체점검의 날(매월 말일까지)을 운영하여 추출된 갱신 자료에 대하여 해당 실무책임자는 조치하고 부서장이 승인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청백-e 시스템 지방재정 상시모니터링 추출 자료를 처리기한 내 담당자가 조치하고 승인기한 내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여 하는데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과오납 등 방지」외 2개 예방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추출자료 14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경과한 감사당일까지 조치 후 부서장이 승인을 처리하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추출자료 조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청백-e시스템에서 추출된 미처리 자료를 기한 내 적기 처리 및 승인하여 행정오류 예방과 비리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월 자체 점검의 날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9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	주의	-	

【제 목】 공사 시공업체 선정 소홀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 황】

- 공사 시공업체 선정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계약 방법	계약 금액	계약 일자	사업내용	시공업종 선정		비고
					계약시 선정업종	정상 선정업종	
3건		49,820,000					
청주랜드 야외 화장실 보수공사	1인 수의 계약	17,370,000	2016. 06.07	화장실 변기 등 보수	도장공사업	시설물유지 관리업	***
연산홍 관람로 보수공사	“	16,500,000	2017. 08.07	보도블럭 포장	일반사업자	토공사업	***
신재생에너지관 캐노피 보수공사	“	15,950,000	2017. 07.19	캐노피 보수	“	시설물유지 관리업	***

【지적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고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 등)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은 별표 1(붙임)과 같다고 규정하고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를 명확히 하고 있다.

○ 하지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야외 화장실 보수공사는 공사내용이 화장실 변기 보수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소지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나 도장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산홍 관람로 보수공사 및 신재생에너지관 캐노피 보수공사는 각 토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 면허소지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나 일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공업체 선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과 유사한 업종으로 계약 할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0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훈계2	주의	-	

【제 목】 하자보증금(각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 실시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등

1. 하자보증금(각서) 미징구

【현 황】

○ 하자 보수 보증금(각서)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계약금액	지출일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비고
계(17건)	265,933,000				
동물원 당나귀사의 내실 보완공사	18,172,000	2016.03.11	***	1인수의 계약	하자보증금 (각서) 미징구
제2전시관 화장실 보수공사	18,450,000	2016.03.31	***	“	“
유희시설 주변 바닥공사	13,250,000	2016.04.08	***	“	“
제2전시관 외부 돔 도장공사	13,800,000	2016.04.21	***	“	“
청주랜드 야외 화장실 보수공사	17,370,000	2016.06.29	***	“	“
청주랜드 지주관판 설치제작	18,000,000	2017.03.24	***	“	“
샴 방사훈련장 설치공사	18,172,000	2017.04.10	***	“	“
동물원 관람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9,300,000	2017.04.10	***	“	“
사랑새장 그물망 교체공사	14,872,000	2017.04.13	***	“	“
동물원내 휴게시설 정비	18,120,000	2017.04.20	***	“	“

사업명	계약금액	지출일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비고
동물원내 목조웬스 외 도색공사	17,633,000	2017.04.26	***	“	“
어리이회관 옥상 방수공사	18,190,000	2017.05.08	***	“	“
전기온수기 및 배수펌프 설치공사	9,394,000	2017.05.16	***	“	“
동물원 방사장 조성공사	17,980,000	2017.06.05	***	“	“
동물원내 개과사 환경개선공사	18,000,000	2017.06.08	***	“	“
청소용역 휴게실 설치 및 동물원 매점 정비공사	10,648,000	2017.06.30	***	“	“
동물원 반입동물 계류장 설치공사	14,582,000	2017.07.04	***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0
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따르면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
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법률 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7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를 받았으므로,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될시에는 즉시 실행 변상 또는 재 시공할 것을 약속하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귀 관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 받아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동물원 당나귀사의 내실 보완공사 등 17건 265,933,000원의 공사 준공급 지급시 하자보증이행각서를 미징구 한 사실이 있다.

2. 하자(따로)검사 미실시

【현 황】

○ 2016.상반기~2017.하반기 하자(따로)검사 미실시 내역

⇒ 63건/1,076,897,000원

- 2016년 상반기 : 7건/100,662,000원
- 2016년 하반기 : 10건/151,777,000원
- 2017년 상반기 : 18건/292,344,000원
- 2017년 하반기 : 28건/532,114,000원

○ 2016.상반기~2017.하반기 하자관리부 미작성 미비치

(단위 : 원)

사업명	준공금액	준 공 접사일	하자담보기간 (년월일)	계약자	비고
계	532,114,000				
동물원 당나귀사의 내실 보완공사	18,172	2016.03.11	2016.03.11 ~2018.03.11	***	2016.상반기, 2016.하반기, 2017.상반기, 2017.하반기 하자(따로)검사 미실시
제2전시관화장실보 수공사	18,450	2016.04.01	2016.04.01 ~2018.04.01	***	“
유희시설 주변 바닥공사	13,250	2016.04.05	2016.04.05 ~2018.04.05	***	“
제2전시관외부돔도 장공사	13,800	2016.04.11	2016.04.11 ~2018.04.11	***	“

사업명	준공금액	준공 접사일	하자담보기간 (년월일)	계약자	비고
청소인부 휴게실 설치공사	14,510	2016.50.04	2016.05.04 ~2018.05.04	***	“
제3전시관주변올타 리보수공사	10,180	2016.05.13	2016.05.13 ~2018.05.13	***	“
동물원 도장공사	12,300	2016.06.10	2016.06.10 ~2018.06.10	***	“
청주랜드 야외 화장실 보수공사	17,370	2016.06.29	2016.06.29 ~2018.06.29	***	2016.하반기, 2017.상반기, 2017.하반기 하자(따로)검사 미 실시
청주랜드사업소 LED전등 교체공사	15,600	2016.07.19	2016.07.19 ~2018.07.19	***	“
조식동물사 시설개선 공사	18,145	2016.10.24	2016.10.24 ~2018.10.24	***	“
샬 방사훈련장 설치공사	18,172	2017.03.31	2017.03.31 ~2019.03.31	***	2017.상반기, 2017.하반기 하자(따로)검사 미 실시
사랑새장 그물망 교체공사	14,872	2017.04.12	2017.04.12 ~2019.04.12	***	“
동물원내 목조웬스 외 도색공사	17,633	2017.04.21	2017.04.21 ~2019.04.21	***	“
동물원내 휴게시설 정비	18,120	2017.04.18	2017.04.18 ~2019.04.18	***	“
어린이회관 옥상 방수공사	18,190	2017.05.01	2017.05.01 ~2019.05.01	***	“
동물원내 개과사 환경개선공사	18,000	2017.05.30	2017.05.30 ~2019.05.30	***	“
동물사 절개지 정비공사	17,600	2017.05.26	2017.05.26 ~2019.05.26	***	“
동물원 방사장 조성공사	17,980	2017.06.02	2017.06.02 2019.06.02	***	“
동물원 반입동물 계류장 설치공사	14,582	2017.07.03	2017.07.03 ~2019.07.03	***	2017.하반기 하자(따로)검사 미 실시
청소용역 휴게실 설치 및 동물원 매점정비공사	10,648	2017.06.27	2017.06.27 ~2019.06.27	***	“
청주랜드 조정 유지관리 공사	13,662	2017.07.03	2017.07.03 ~2019.07.03	***	“
신재생 에너지관 캐노피 보수공사	15,950	2017.08.08	2017.08.08 ~2019.08.08	***	“
영상관 및 본관 방수 보수공사	18,290	2017.08.25	2017.08.25 ~2019.08.25	***	“
연산홍 관람로 보수공사	16,500	2017.08.17	2017.08.17 ~2019.08.17	***	“
동물원 표범방사장 및 이동통로 설치공사	106,468	2017.09.02	2017.09.02 ~2019.09.02	***	“

사업명	준공금액	준공 검사일	하자담보기간 (년월일)	계약자	비고
사업소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2,200	2017.09.02	2017.09.02 ~2019.09.02	***	“
청주랜드 주변 가로등 보완 전기공사	17,170	2017.09.08	2017.09.08 ~2019.09.08	***	“
열대관 외 1개소 보수공사	14,300	2017.10.16	2017.10.16 ~2019.10.16	***	“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종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3천만원 이하의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리고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하지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상반기 7건/100,662,000원, 2016년 하반기 10건/151,777,000원, 2017년 상반기 18건/292,344,000원, 2017년 하반기 28건/532,114,000원 등 2016~2017년 2년 동안 총 63건 1,076,897,000원의 하자 및 따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 관리부도 작성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징구하고, 하자검사

를 매년 2회를 실시하되 상반기는 6월중에,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하며, 따로검사는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해당 월에 실시하기 바람,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따로)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무원】

- 청주랜드사업소 행정*급 ***
- 청주랜드사업소 행정*급 ***

【훈계】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	주의	-	

【제 목】 물품(램프) 통합발주 노력 미흡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현 황】

- 유사물품(램프) 구매 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적요	계약일자	지급액	계약 방법	거래처명	비고
계(2건)			15,499,000			
재료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터 램프 구입	2016-03-31	7,755,000	1인수 의계약	***	
“	기후변화체험관 프로젝터 램프구입	2016-03-31	7,744,000	“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터 및

기후변화체험관 프로젝터 램프를 구입하면서 유사물품 구매 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통합 발주(계약)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한데도 위 현황과 같이 각각 따로 나누어 2016. 03. 31. ***와 7,755,000원, 7,744,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자들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품구매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2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	시정	매입/1,65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관련규정】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

【현 황】

- 2016~2017년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지출일자	지출금액	채권매입		미소화 납액	비고
			정상구입	기구입액		
계(14건)		74,588,820	1,690,000	40,000	1,650,000	
청소용품 구입	2016.04.21	3,792,000	50,000		50,000	***
동물용 의약품 등 구입	2016.06.20	4,652,440	60,000	0	60,000	***
동물진료용 인체약품 구입	2016.06.20	2,824,680	30,000	0	30,000	***
제3전시관 병축열 냉동기 세관 및 냉각탑 정비공사	2016.06.29	5,550,000	120,000	0	120,000	***
본관 및 제3전시관 공조기 환 및 모터베어링 교체공사	2016.06.29	3,790,000	80,000	0	80,000	***
부화기 구입	2017.05.16	2,500,000	30,000	0	30,000	***
동물원 방사장 조성공사	2017.06.05	17,980,000	400,000	0	400,000	***
일본 원숭이사 관람료 보수공사	2017.07.06	4,272,000	90,000	0	90,000	***
서식지관련 용품 (스페시멘컵외16종)	2017.08.18	2,207,700	50,000	0	50,000	***
연산홍 관람로 보수공사	2017.08.22	16,500,000	370,000	0	370,000	***

사 업 명	지출일자	지출금액	채권매입		미소화 납액	비고
			정상구입	기구입액		
동물원 내 포토존 설치공사	2017.08.22	4,140,000	90,000	0	90,000	***
동물원 포토존 조경시설공사	2017.10.16	3,432,000	70,000	40,000	30,000	***
동물진료 관련 혈액 검사용품 구입	2017.11.02	2,948,000	40,000	0	40,000	***
동물사 안전시설 보강공사	2017.12.29	9,360,000	210,000	0	210,000	***

【지적내용】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공채의 발행)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총 계약금액이 200만원(부가세 미포함) 이상인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계약금액의 2.5/100(공사), 1.5/100비율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2016~2017년 청소용품 구입 등 14건 74,588,820원의 공사(물품)를 계약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1,650,000원의 충청북도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나 소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사업소장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2016~2017년 청소용품 구입 등 14건 1,650,000원의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도록 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개발 채권 매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	주의	-	

【제 목】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각서(확약서) 미징구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현 황】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 방법	비고
계(14건)	123,240,000					
2018년 사업소 무인경비 위탁계약	15,000,000	2017.12.28	2018.01.01 ~2018.12.31	***	수의 계약	확약서 미제출
2018년 방역소독 계약	6,840,000	2017.12.29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	6,828,000	2017.12.20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대행 용역 계약	11,400,000	2017.12.29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사업소 무인경비 위탁 계약	15,600,000	2017.12.28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기후변화 체험관 유지보수 업무대행 계약	5,040,000	2017.12.28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동물원 입장권 발급기 및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대행 계약	3,576,000	2017.12.29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6,996,000	2017.12.20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수족관 유지관리 업무대행	3,732,000	2017.12.29	2018.01.01 ~2018.12.31	***	“	“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비고
2018년 동물번식장 감시 카메라 임대계약	7,200,000	2017.12.28	2018.01.01 ~2018.12.31	***	“	“
방향제 및 세정제 납품(설치) 단가계약	7,788,000	2017.12.27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업무대행 계약	8,760,000	2017.12.29	2018.01.01 ~2018.12.31	***	“	“
맹수사 CCTV 설치유지 임차계약	12,480,000	2017.12.29	2018.01.01 ~2018.12.31	***	“	“
2018년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	12,000,000	2017.12.29	2018.01.01 ~2018.12.31	***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에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 "확약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년 사업소 무인경비 위탁계약을 ***과 15,000,000원에 계약하는 등 총 14건 123,240,000원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제출 받지 않았다.

○ 그러나,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약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총 14건 123,240,000원의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 각서(확약서)을 제출받을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 앞으로 위와 같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보증금 각서(확약서)을 징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4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	시정	추징/80,000원	

【제 목】 인지세(수입인지) 미 징수

【관련규정】

- 인지세법 등

【현 황】

- 인지세(수입인지) 미 징수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 일자	계약금액 (연간총액)	업체명	수입인지		차 액	비고
				정상액	구입액		
계(4건)		61,050,000		80,000	0	80,000	
제2전시관 화장실 보수공사	2016. 03.31	18,450,000	***	20,000	0	20,000	
청주랜드사업소 LED 전등 교체공사	2016. 06.30	15,600,000	***	20,000	0	20,000	
2018년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대행 용역 계약	2017. 12.20.	11,400,000	***	20,000	0	20,000	
2018년 사업소 무인경비 위탁 계약	2017. 12.28.	15,600,000	***	20,000	0	20,000	

【지적사항】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르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해당되며, 인지세액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2017년 제2전시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건 61,05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이므로 각 2만원 씩 총 80,000원의 인지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제2전시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건 80,000원의 인지세를 징구하시고,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세 징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5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	시정	-	

【제 목】 청원경찰 제복 미착용

【관련규정】

- 청원경찰법 등

【현 황】

- 청원경찰 제복 미착용내역<감사기간중(2018. 07. 09~07. 13.)>

청원경찰		주요 담당업무	제복(근무복) 착용 여부	비 고
소속	성명			
계	2명			
청주랜드 사업소 (관리팀)	***	-청사경비 -어린이 회관 주차장 관리	미착용	- 2016.10.10. 근무복 480,000원상당 구입 배부 (1인 240,000원)
청주랜드 사업소 (운영팀)	***	-동물원 매표 관리 -주차장관리 -조경 및 화단 관리	미착용	- 2017.06.16. 근무복 480,000원상당 구입 배부 (1인 240,000원)

【지적사항】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중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그리고, 청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제3조(근무기장 확립)의 규정

에 따라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사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주랜드사업소에서는 관리팀에서 청사경비 및 어린이회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팀에서도 동물원 매표업무와 동물원 주차장관리, 동물원 조경 및 화단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1명(***)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기간중(2018. 07. 09~07. 13.) 점검결과, 규정에 따라 근무중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나 경찰부서 협의(문서는 없음)와 어린이회관과 동물원의 주 고객인 유아, 어린이들에게 위압감을 줄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청원경찰법 및 청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에 따라 근무기간중에는 제복을 착용할수 있도록 하시고, 어린이회관 및 동물원의 특성상 제복을 입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원경찰 제복착용에 대한 내부 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6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시정	추징/2,708,716원	

【제 목】 공금통장 불용액 세입 조치 소홀 등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4조
- 「지방회계법」 제20조
-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33조 내지 제39조

【현 황】

1. 공금통장 불용액 세입 등 조치 소홀내역

(금액단위 : 원)

공공예금 통장(계좌) 용도	인감명의	불용액(원인미상 등)			불용액 세입 등 조치여부
		발생일자	발생내용	금액	
계	5건			2,708,716	
통일관 운영 보조금 통장 (농협100**-*****)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장의인	2018년 포함 이전	이자발생금	68,096	부
신용카드 통장 (농협180**-*****)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지출원인	2018년 포함 이전	이자발생금 및 포인트	112,570	부
세입세출외현금 (농협180**-*****)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2018. 2월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금	2,511,860	부
동물원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용 (농협301**-*****)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장의인	2016년이전	원인미상	13,000	부
입찰보증금용 (농협301**-*****)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장의인	2018년 포함 전	이자발생금	3,190	부

2. 사용하지 않는 공금통장 미해지 등 내역(2018.7.13.현재)

(금액단위 : 원)

통장용도	통장 사용인감	계좌번호	잔액	통장 개설근거	비고
통일관 운영 보조금	청주랜드관리 사업소장의인	농협 1100-**-*****	68,096	보조금 통장	사업종료로 미사용
입찰보증금	청주랜드관리 사업소장의인	농협 301-**-*****	3,190	없음	
공금예금통장	청주랜드관리 사업소지출원인	농협 374-****-***** **	0	지출원 발급	미사용통장

【지적내용】

1. 공금통장 불용액 세입 등 조치 소홀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발생 당시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각종 과오납금, 일상경비,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의 규정에 의거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고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반납으로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금통장에 보관 중인 잔액에 대하여는 매월 관련자료(카드사용명세서 등)를 확인하여 과오납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조치하고 이자발생금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통일관 운영 보조금 통장 등 5개의 통장에 원인미상 불용액, 부가세경정청구 환급금 및 이자발생금 불용액 등 총 2,708,716원에 대하여 2018. 7. 13.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등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사용하지 않는 공금통장 해지 등

○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직인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의 규정에 지정된 경비의 관리 및 지급 명령 등에 사용하는 중요한 공인으로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공공예금 통장의 개설·운용은 관련법규에 맞게 제도권 범위내에서 개설하여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정상적인 통제(결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통장 개설 근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통장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종료에 따른 통일관 운영 보조금 통장(최종거래일 2014. 12. 16.)과 사용하지 않는 공금예금통장(최종거래일 2013. 2. 26.)에 대해 통장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회계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2015. 10. 13.에 입찰보증금 보관통장을 관련법규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개설 운영하여 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관 운영 보조금 통장 등 5개의 통장에 원인미상 불용액,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금 및 이자발생금 불용액 등 총 2,708,716원을 세외수입(기타
수입) 조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금통장 및 개설근거 없이 임의 개설된
통장 3개를 해지하기 바라며,

○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7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주의1	시정	회수/ 7,532원	

【제 목】 세출예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 세출예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 내역 : 10회

(단위 : 원)

연체료 발생내역			납부 방법	부정지급 사유
발생일	원금	연체료		
계	6,947,793	7,532		
2016.08.30.	271,130	177	자동납부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2016.10.19.	601,327	2,363	〃	〃
2017.06.28.	1203,980	789	〃	〃
2017.09.14.	481,309	316	〃	〃
2017.09.28.	187,995	123	〃	〃
2017.10.13.	796,166	844	〃	〃
2017.10.17.	493,702	972	〃	〃
2017.12.28.	2,768,514	1,818	〃	〃
2018.03.02.	84,312	106	〃	〃
2018.05.25.	59,358	24	〃	〃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I 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③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 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바로 신용카드 결제통장에 입금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출 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2016. 8월부터 2018. 5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납부를 지연(10회)하여 7,532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연체료에 대해 세출예산에 정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신용카드 사용 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7,532원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 지연에 따라 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집행한 연체료 7,532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시고

○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금번에 한하여 회계 실무담당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 책임자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공무원】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행정*급 ***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8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시정	추징/4,950원	

【제 목】 별누리 교실 강사수당 (지방)소득세 징수 소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현 황】 강사수당 (지방)소득세 미징수 현황

(단위:원)

적 요	강사	지급일	지급액	정당 징수세액			미징수액	비고
				계	소득세	지 방 소득세		
			150,000	4,950	4,500	450	4,950	
2018 별누리 교실 1회차 운영 강사수당 지출	***	2018.04.19.	100,000	3,300	3,000	300	3,300	
2018 별누리 교실 1회차 운영 강사수당 지출	***	2018.04.19.	50,000	1,650	1,500	150	1,650	

【지적내용】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제1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더불어 소득

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총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같은 법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별누리 교실 운영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과 ***에게 별누리 교실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사업소득세 총 4,950원(소득세 4,500원, 지방소득세 45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4,950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징하여 주시고,

○ 앞으로 강사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추징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9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시정		

【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관련규정】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

【현 황】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 2017.02.24. 제603호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 부(2017년~2018년 5월)/ 3건 1,445,500원

지출과목	적 요	집행일자	사용금액	채 주
	계(3건)		1,445,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CJ선물세트 구입	20170126	594,000	***
"	어린이날 행사에 따른 중식 식자재 구입	20170508	403,300	*** 외 1
"	어린이날행사에 따른 중식 식자재 구입	20180525	448,200	(주)***외 1

【지적내용】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사 수, 집행유형, 금액금액으로 한다.

○ 따라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건 1,445,500원에 대해 감사일(2018. 7. 10.) 현재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건 1,445,500원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후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0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주의		

【제 목】 세출예산 예산과목 성질별 집행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현 황】

- 세출예산 예산과목 성질별 집행 소홀 내역

(단위:원)

과 목	적 요	지출일	집행액	거래처	적합 예산과목
계	5건		3,450,200		
재료비	생태관 야생화관 꽃말	20170628	330,000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고양이 모래 및 사료 구매	20170714	1,076,000	***	재료비
재료비	청사운영 소모품 자재구입	20170720	794,200	***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고양이 사료 및 모래)	20171120	1,076,000	***	재료비
재료비	동물원 매점 수유실 유아침대 교체용 매트리스 구입	20180320	174,000	***	사무관리비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재료비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 따라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세출예산 예산과목 성질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생태관 야생화관 꽃말 등 3건 1,298,200원의 예산집행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재료비로 집행하였으며, 고양이 모래 및 사료 구매 등 2건 2,152,000원은 재료비로 집행하여야 했으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5건 3,450,200원에 대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예산과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예산을 재료비로 집행하는 일과 재료비로 집행할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 과목별 구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1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주의		

【제 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1. 신용카드 사용 관리 소홀

- 신용카드 보관 책임자 상호 확인 및 기명날인 누락 등

발 급 일	카드번호	금융기관		신용카드 보관 책임자 기명날인 여부
		기관명	계좌번호	
2013. 01. 10. 2013. 01. 10.	4140-****-****-**** 4140-****-****-**** (만료일 : 2018. 2월)	농협	1180-**-*****	부
2017. 12. 12. 2017. 12. 12. (자동갱신)	4140-****-****-**** 4140-****-****-****			

※ 신용카드 자동갱신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여부 : 부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미공개 현황 : 47건 67,808,500원(불임참조)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소홀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미 작성·비치 : 2015. 11월 ~ 2018. 5월
- 매월 1회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결재 누락 : 2015. 11월 ~ 2018. 5월

【지적내용】

1. 신용카드 사용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2013. 2월에 발급한 2개 카드의 유효기간이 2018.2월까지로 카드사에서 2017. 12. 12.에 2개 카드에 대해 자동갱신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작성·비치하여 기존 신용카드 2개를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8.2월까지 쓸 것인지, 발급일인 2017. 12. 12.부터 자동갱신된 신용카드를 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 하지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신용카드 자동갱신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감사일(2018. 7. 10.) 현재까지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지출원이 변경될 때마다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지출원이 변경되었어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상호 확인 및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지출원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47건 67,808,500원에 대해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사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하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

으로 등록하고도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2015. 11월 ~ 2018. 5월까지 작성·비치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알 수 없게 관리 하였으며,

매월 1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재무관인 소장까지 결재를 하여야 했으나 2015. 11월 ~ 2018.5월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하지 않아 소장까지 결재하지 않는 등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작성·비치 누락, 지출원이 변경될 때마다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상호 확인 및 기명날인 누락, 신용카드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매월 1회 행정전산망에 공개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관리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재무관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2		조치사항		
소 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비 고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훈계1		주의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에 따른 영수증 미첨부 등 소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현 황】

1. 지출증빙서 영수증 미첨부 내역

(단위:원)

현금 종류	지급 일자	지급 번호	지급사유	청구자	지급액	지출 방법	지출증빙서 영수증 첨부여부
계			34건		16,273,200		
보관금- 건강보험 료	2016-0 2-11	1	2016. 1월분 공무 직 4대보험료 본 인부담금 납부	청주랜드관리 사업소/일반회 계/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1,404,400	고지서	부
보관금- 국민연 금	2016-0 3-10	2	2016. 2월분 공무 직 4대보험 납부	국민연금공단	418,600	〃	〃
보관금- 건강보 험료	2016-0 4-11	3	2016. 3월분 공무 직 기간제 4대보 험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312,750	〃	〃
보관금- 건강보 험료	2016-0 4-11	4	2016. 3월분 공무 직 기간제 4대보 험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136,920	〃	〃
보관금- 고용보 험료	2016-0 4-11	5	2016. 3월분 공무 직 기간제 4대보 험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62,340	〃	〃

현금 종류	지급 일자	지급 번호	지급사유	청구자	지급액	지출 방법	자출증빙서 에영수증 첨부여부
보관금- 고용보 험료	2016-0 4-11	6	2016. 3월분 공무 직 기간제 4대보 험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27,300	〃	〃
보관금- 국민연 금	2016-0 4-11	7	2016. 3월분 공무 직 기간제 4대보 험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425,690	〃	〃
보관금- 국민연 금	2016-0 4-11	8	2016. 3월분 공무 직 기간제 4대보 험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189,000	〃	〃
보관금- 소득세	2016-0 4-11	9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7,916,300	〃	〃
보관금- 소득세	2016-0 4-11	10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556,560	〃	〃
보관금- 소득세	2016-0 4-11	11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28,000	〃	〃
보관금- 소득세	2016-0 4-11	12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28,000	〃	〃
보관금- 주민세	2016-0 4-11	13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2,800	〃	〃
보관금- 지방소 득세	2016-0 4-11	14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791,590	〃	〃
보관금- 지방소 득세	2016-0 4-11	15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55,640	〃	〃
보관금- 지방소 득세	2016-0 4-11	16	2016. 3월 원천징 수 귀속분 신고	청주세무서	2,800	〃	〃
보관금- 건강보 험료	2016-0 4-11	17	2016. 3월분 기간 제(전소진) 기관 부담금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45,640	〃	〃
보관금- 고용보 험료	2016-0 4-11	18	2016. 3월분 기간 제(전소진) 기관 부담금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21,000	〃	〃
보관금- 산재보 험료	2016-0 4-11	19	2016. 3월분 기간 제(전소진) 기관 부담금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23,800	〃	〃
보관금- 국민연 금	2016-0 4-11	20	2016. 3월분 기간 제(전소진) 기관 부담금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63,000	〃	〃
보관금- 국민연 금	2016-0 4-11	21	2016. 3월분 공무 직 기간제 4대보 험 납부	국민연금 (행정도우미)	1,215,470	〃	〃
보관금- 건강보 험료	2016-0 5-10	36	2015. 4월분 4대보 험 납입	국민연금	312,750	〃	〃

현금종류	지급일자	지급번호	지급사유	청구자	지급액	지출방법	자출증빙서에영수증첨부여부
보관금-고용보험료	2016-05-10	37	2015. 4월분 4대보험 납입	국민연금	62,340	〃	〃
보관금-국민연금	2016-05-10	38	2015. 4월분 4대보험 납입	국민연금	425,690	〃	〃
보관금-국민연금	2016-05-10	39	2015. 4월분 4대보험 납입	국민연금	235,480	〃	〃
보관금-소득세	2016-05-10	40	2016. 4월분 소득세	동청주세무서	451,830	〃	〃
보관금-소득세	2016-05-10	41	2016. 4월분 소득세	동청주세무서	56,000	〃	〃
보관금-지방소득세	2016-05-10	42	2016. 4월분 소득세	동청주세무서	45,210	〃	〃
보관금-지방소득세	2016-05-10	43	2016. 4월분 소득세	동청주세무서	5,600	〃	〃
보관금-건강보험료	2016-06-09	44	2016. 5월분 기간제 및 공무원직 4대 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298,840	〃	〃
보관금-건강보험료	2016-06-09	45	2016. 5월분 기간제 및 공무원직 4대 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294,640	〃	〃
보관금-건강보험료	2016-06-09	46	2016. 5월분 기간제 및 공무원직 4대 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235,480	〃	〃
보관금-고용보험료	2016-06-09	47	2016. 5월분 기간제 및 공무원직 4대 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59,400	〃	〃
보관금-고용보험료	2016-06-09	48	2016. 5월분 기간제 및 공무원직 4대 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62,340	〃	〃

2. 세입세출외현금 지출방법 부적정

○ 4월분 보수 지급 : 2016. 4. 10.

- 보수 지급 시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 1,036,260원 세입세출외현금에 납부

○ 4월분 4대 보험료 지급 내역 : 2016. 5. 10. 납부

(단위:원)

보험금 고지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지급*	보험금 납부액
3,329,920	1,913,550	1,036,260	380,110	3,329,920

* 본인부담금 부족분(공무직 김영덕 외 2명 354,070원, 전출자 및 퇴직자 권용한 외 4명 26,070원)
회계담당자 개인현금으로 납부

○ 현금지급

(단위:원)

지출일자	지급사유	청구자	지급액*	지출 방법	비고
2016-06-09	4대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청주랜드관리 사업소	354,040	현금	

* 회계담당자가 2016. 5. 10. 보험료 개인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380,110중 공무직 김영덕 외 2명
대납 금액 354,040원 수령
→ 차액 26,070원은 전출자 및 퇴직자로 회계담당자가 보험료 납부시 대납으로 종료

3. 세출예산 지출 방법 부적정

(단위:원)

세부사업	지출과목	적요	지급액	지급일 자	지급방법	채주
기본경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팩스기 구입	552,670	20160219	계좌이체	***

- 정당지급방법 : 고지서 납부
- 정당채주 : 충북지방조달청 수입징수관
- 착오지급에 따른 반납결의 내부결재 및 반납결의서 작성 여부 : 부
 - 2016. 2. 22. : 채주 착오 지급에 따른 반납 552,670원(세입세출외현금통장)
 - 2016. 2. 24. : 정당채주인 충북지방조달청 수입징수관에게 고지서 납부

【지적내용】

1. 지출증빙서에 납부영수증 미첨부

○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31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르면
수입이나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고,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 같은 규칙 제156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에 따른 납부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에 첨부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에서 2016. 1월부터 6월까지 “2016. 1월분 공무직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등 34건 16,273,200원을 고지서로 납부하면서 증빙서류인 납부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 하였다. 이로 인해 증빙서류가 분실될 소지가 있는 등 지출증빙서 편철을 소홀히 하였다.

2. 세입세출외현금 지출방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 시행), 제 I 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II.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2015.11.27 규칙 제140호)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예금의 통장 운용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에 맞게 제도권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 되도록 운용하여야

4)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 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 여비

한다.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2016. 4. 20. 4월분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따른 4대 보험료 1,036,26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하고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납입하였다. 2016. 4월분 4대 보험료 고지액은 3,329,920원으로 통보되었다. 그러나, 2016. 4월분 4대 보험료 고지액 3,329,920원에서 고지서 내용 확인 결과 본인부담금은 1,416,370원으로 2016. 4. 20. 본인부담금 추정시 380,110원을 덜 추정하였다.

○ 이로인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2016. 5. 10.에 2016. 4월분 4대보험료 3,329,920원에서 기관부담금 1,913,550원, 본인부담금 1,036,260원과 본인부담금 부족분을 회계담당자 개인 현금 380,110원 (공무직 *** 외 2명 354,070원, 전출자 및 퇴직자 권용한 외 4명 26,070원)으로 지급하였다. 회계담당자가 2016. 5. 10. 보험료 개인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380,110중 전출자 및 퇴직자 본인부담금 26,070원은 회계담당자가 보험료 납부시 대납으로 종료 하였다.

○ 2016. 5월분 공무직 인건비 지급 시 회계담당자는 *** 외 2명에 대해 덜 징수한 2016. 4월분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354,040원에 대해 추가 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출하였다.

○ 회계담당자는 2016. 6. 9.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서 보험료 본인부담금 대납 354,0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이 수령하였다.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2016. 4월분 4대 보험료 3,329,920원을 납부하기 전에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정확하게 책정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을 경우 본인들에게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입 받아 지출하여야 했으며, 회계담당자가 대납 한 공무직 보험료 본인부담금 354,040원은 계좌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입금 처리하여야 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회계업무처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게 제도권 범위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출 방법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3. 세출예산 지출 방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 시행), 제 I 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II.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⑨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2015.11.27 규칙 제140호)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과오납금, 일상경비,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반납처리 없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등에 반납 받아 그 계좌에서 직접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호조와 지출결의서상의 채주는 잘못된 채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잘못 지출되었을 때는 본래 예산과목으로 반납절차를 통해 반납하고 다시 지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2016. 2. 19. ***에게 팩스기 구입 대가로 552,67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러나, 팩스기 구입은 조달청 제3자 단가 구매로 계약한 건으로 충북지방조달청 수입징수관이 정당채주이기 때문에 ***은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다.

○ 따라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채주를 착오하여 ***에게 잘못 지급한 552,670원에 대해 반납절차를 통해 해당과목에 반납을 하고 다시 지출절차를 통해 정당채주인 충북지방조달청 수입징수관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러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반납하겠다는 결재와 반납결의서 없이 ***으로부터 2016. 2. 22.에 세입세출외현금통장으로 552,670원을 반납 받았으며, 지출절차 및 내부결재 없이 회계담당자 임의로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서 552,670원을 인출하여 2016. 2. 24.에 충북지방조달청 수입징수관에게 팩스기 구입에 대한 대가를 고지서로 지급하였다.

○ 그 결과 ***와 지출결의서상의 채주는 잘못된 채주로 남아 있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지출증빙서 편철 업무를 하면서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지출증빙서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 보험료 납부 시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철저히 책정하고 회계

업무처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게 제도권 범위를 벗어나게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채주 착오 지급 시 착오된 금액을 해당 예산과목에 반납하고 다시 지출절차를 통해 지출하여 정당채주에게 지출하는 등

○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금번에 한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실무담당자에게 훈계 조치합니다.

【관련공무원】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행정*급 ***

【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3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 주 랜 드 관 리 사 업 소	-	시정	-	

【제 목】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 소홀

【관련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환경부고시 제2018-83호]

【현 황】

-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건축물명	석면조사기관 평가결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일(최종)	정기조사 실시여부	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작성 여부	석면 철거
	평가일	위해성 등급	석면면적				
어린이회관 제1전시관	2014. 12.29	낮음	275.13	2018. 1. 23	여	부	-
어린이회관 제2전시관	2014. 12.29	낮음	1957.48	-	여	부	2018.2.9. 철거완료
어린이회관 제3전시관	2014. 12.29	낮음	113.91	2018. 1. 23	여	부	-
동물원 관리사무소	2015. 1.7.	낮음	170.88	2018. 1. 23	여	부	-

【지적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안전관리인”이라 함)으로 지정(변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인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안전관리인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⁵⁾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제외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석면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

- 기 시행한 정기적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고,
- 위의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과 같이 어린이회관 제2전시관의 석면건축 자재가 철거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소장은 기 조사한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 석면건축자재가 철거된 어린이회관 제2전시관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4				
소 관	조치사항			비 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방법/금액)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	시정	회수/568,930원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등 정산 소홀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정산금액	지적사항 반영금액	회수대상 금액	지적사항
동물원 표범방사장 및 이동통로 설치 공사	(주)*** 대표 김**	108,200,000	106,468,840	105,899,910	568,930	사용실적 부재 및 산식 오류

【지적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동물원 표범방사장 및 이동통로 설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 계상된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실적을 확인할 증빙 서류가 없음에도 정산을 하지 않고, 정산금액 산정 시 이윤 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총 568,93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동물원 표범방사장 및 이동통로 설치 공사의 과다 지급된 금액 568,930원에 대하여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 바랍니다.